

의안번호	2209739
의 퇴 인	장철민 의원
회 답 일	2025. 5. 7.
추계번호	25A2101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의2(교구등에 관한 특례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칠판,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4조의2(교구등에 관한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만 13세 어린이가 사용하는 교구에 대해 안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,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함(안 제14조의2 신설)
- 개정안의 교구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안전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3조¹⁾에 따라 어린이 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사업²⁾을 수행하고 있음
 - 어린이 제품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 관련 사업 예산은 [표1]과 같음

[표 1]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사업 예산 편성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 (-내역사업명)	2023	2024	2025
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-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	520	468	358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- 다만, 개정안의 “교구 등”의 범위가 어린이제품³⁾과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, 교구의 종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또한 안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서도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음

-
- 1)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.
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(이하 "안전기준"이라 한다)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,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④ 사업자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, 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
- 2) 동 사업비에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조사 분석 등을 수행하는 비용도 포함됨
- 3)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어린이제품”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.
- 가.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
 나.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
 다. 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
 라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·포장
 마. 「관광진흥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(遊技施設) 또는 유기기구(遊技機具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nabo.go.kr